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2728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남현
피고, 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종훈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0가단1246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5,000,000원, 피고 D는 1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C"를 "피고 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음반에 수록된 'E', 'F'가 이 사건 저작물 중 'E', 'F'의 일부 소절을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여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참조).



또한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사가 있는 노래 중 가사 부분은 작사가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사가 있는 노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58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래는 가사와 악곡이 각각 별개의 저작권의 객체가 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도 가사와 악곡을 분리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갑 제1, 2, 45, 50, 51, 58, 5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저작물과 제1 음반에 수록된 각 곡에서 어문저작물은 '가사'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저작물 중 'E'의 가사와 이 사건 제1 음반에 수록된 'E'의 가사, 이 사건 저작물 중 'F'의 가사와 이 사건 제1 음반에 수록된 'F'의 가사는 다르지 않다. 피고 회사가 'E'와 'F'의 각 가사를 변형하거나 수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2019. 4. 29.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R이 'E'를 편곡하여 S가 가창한 것을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에 2차적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9. 6. 29. 주식회사 Q로부터 위와 같이 등록된 2차적저작물인 'E'에 대한 저작권접권 등을 양수한 정상기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였고, I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그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4) 감정인은 피고 회사의 S 가창 'E'에 대해 '원곡을 기초로 하면서도 구조, 화성, 리듬, 사운드 전반에 걸쳐 창작적 변형이 이루어진 편곡으로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위 'E'가 이 사건 저작물 중 'E'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악곡 부분에 창작성이 부가된 편곡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는 'E'에 대하여 어문저작물 즉 가사 부분에 대한 저작재산권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E' 악곡 부분(음악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 중 'E'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편곡된 악곡에 기존 가사를 결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사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노래는 악곡과 가사가 결합되어 이용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저작물이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만을 가진다. 악곡에 창작적 변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작곡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문제이고, 가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작사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지 새로 편곡된 악곡과 기존 가사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사 자체가 개작, 수정,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감정인은 피고 회사가 제작한 'F' 악곡 부분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2차적저작물 성립요건인 창작성 부가에 해당하지 않고 2차적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원곡의 복제물로 판단하였다.¹⁾ 또한 원고는 'F'에 대하여 어문저작물 즉 가사 부분에 대한 저작권재산권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F' 악곡 부분(음악 저작물)이 이 사건 저작물 중 'F'의 2차적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6) 원고가 2020. 2. 14. 피고 회사의 대표 T을 '원고의 저작물 "E" 등을 동의 없이 편곡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20. 5. 20.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고는 2020. 5. 25.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검찰은 2020. 5. 27.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법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형제10295호 사건).

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한 무단 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보장되어 있고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한다.²⁾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고(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저작자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라거나 저작인격권을 가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I로부터 복제권 사용을 승인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원고 제출 2020. 8. 11. 자 준비서면 2쪽).

2) U, 저작권법[제5판], 박영사, 2020, 447쪽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음반 중 'N'에 수록된 'E', 'F'가 이 사건 저작물 중 'E', 'F'의 일부 소절을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여 위 각 곡의 어문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제2 음반 중 'O', 'P'에 수록된 'G'이 이 사건 저작물 중 'G'의 일부 소절을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하여 위 곡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D가 위 곡들의 가사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동일성유지권에 저촉된다.

나. 'E', 'F'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갑 제1, 2, 46, 47, 50, 51, 60, 6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가 이 사건 저작물 중 'E', 'F'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저작물과 제2 음반에 수록된 각 곡에서 어문저작물은 '가사'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저작물 중 'E', 'F'의 각 가사와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E', 'F'의 각 가사는 다르지 않다. 피고 D가 'E'와 'F'의 각 가사를 변형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감정인은 피고 D가 제작한 'E'의 악곡 부분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 사소한 수정, 증감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 실질적 개변에 이르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감정인은 피고 D가 제작한 'F'의 악곡 부분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2차적 저작물 성립요건인 창작성 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는 'E', 'F'에 대하여 어문저작물 즉 가사 부분에 대한 저작권재산권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D의 'E', 'F'의 악곡 부분(음악저작물)이 원곡과의 관계에서 2차적 저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수정, 증감된 악곡에 기존 가사를 결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사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피고 D는 2020. 4. 20.경 I로부터 'E', 'F' 음원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20. 4. 21.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다. 'G'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저작물 중 'G'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된 대중가요로 앞서 본 것처럼 가사와 악곡을 별개로 보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저작물중 유일하게 'G'에 대하여만 원고가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악곡 부분

갑 제48, 52, 6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의 악곡이 기존 악곡에 대한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개변한 편곡에 해당하여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저작물 중 'G'과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의 주요 소절은 별지와 같이 대비된다. 기존 악곡에 대한 2차적저작물인 편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악곡을 변조하여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고, 단순히 기존 악곡의 리듬, 가



락, 화성에 사소한 변형을 가하는 정도로는 편곡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은 이 사건 저작물 중 'G'과 악곡 골격음이나 주요 가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양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해당 악기의 악보를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감정인은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은 이 사건 저작물 중 'G'과 비교하여 '가락, 리듬, 화성이라는 음악의 핵심 요소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음색, 믹싱, 공간감 등 음향적 요소에서만 근소한 차이가 식별된다.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넘어 완전한 동일성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단순한 편곡이나 재해석의 범위를 넘어 동일 음원의 복제 또는 동일한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감정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은 원곡에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 D는 2020. 3. 6.과 3. 27.경 I로부터 'G' 음원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3) 가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저작물 중 'G'의 가사와 이 사건 제2 음반에 수록된 'G'의 가사는 다르지 않은 점, 가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가사 부분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가 이 사건 저작물 중 'G'의 가사 부분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라거나 저작인격권을 가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피고 D가 이 사건 저작물의 가사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



별지

이 사건 저작물 'G'	이 사건 제2 음반 'G'
	